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며, 그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령 제8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9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를 “별표 6의3 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4”로 한다.

제10조의4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5와”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으로,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증명서”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6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제77조의3제2항 중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를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로,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9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6서식”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제79조의10을 제79조의14로 하고,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1(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1항 본문”으로,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별표 6의2”를 “별표 6의4”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를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6까지를 각각 제82조의5부터 제82조의7까지로 하고, 제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6(중전의 제82조의5)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을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82조의7(중전의 제8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제1항”으로, “판정하여야”를 “판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저감효율”을 “저감효율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준저감효율”을 각각 “저감효율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은”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로,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제1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로 한다.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수시검사(제82조의10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의10(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9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131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 제한장치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 제22호, 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로 하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 13)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나)(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차별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포집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다)(2) 중 “용적”을 “부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1)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하고, “(강선 건조업만 해당한다)”를 “(도로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강선 건조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3) 중 “희석제”를 “희석제”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옥내 및 야외도장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료(이하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옥내 및 야외에서 도장하는 시설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p> <p>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를 전체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대비 2020년까지 2%, 2021년까지 10%, 2022년까지 30%, 2023년까지 45%, 2024년 이후 60% 이상(옥내에서 도장하는 경우에는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연간 배출량은 1) 및 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의 합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p> <p>다) 나)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은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통해 산정하되, 도료 및 희석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에 따라 연 1회 산정해야 한다.</p> <p>라)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및 배출저감량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연간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p>
--------------	---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가)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현황

별표 10의3 제2호나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

(1)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를 이용하여 옥내 또는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현황

(2)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저감량 현황  
별표 11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각각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4 제1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마목(중전의 바목)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표 16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관리권역에서 2020년 4월 3일 당시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분	배출시설	설치기한
가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22년 4월 2일
나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
다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 1월1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 날이 2023년 12월 31일보다 빠르면 다목에 따른 기한을 적용한다.

비고

1. 휘발유 연간 판매량은 2018년도 기준을 말한다.
  2. 연간 판매량을 산정할 때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3. 위 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설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치기한 직전 연도 판매량이 2018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판매량을 적용한다.
  4.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주유소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위 표에 따른 설치기한 전에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별표 17 제1호가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며, 같은 목 2)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중 “NMOG 측정값”을 “NMOG(비메탄계유기 가스 측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측정값”으로 한다.

별표 17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2020년 12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 방법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NRSC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19kW 이상 37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 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라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라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 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경 우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라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까지 라목에 따 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4. 19kW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6.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7.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 17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8kW 미만	8.0g/ 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NRSC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 /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19kW 이상 37kW 미만	5.0g/ 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kW 이상 56kW 미만	5.0g/ 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 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 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sup>12</sup> #/kWh 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까지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4.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의 국내 판매량 평균이 50대 미만인 제작사는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5.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출고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원동기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원동기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동일 사양 원동기의 국내 공급량의 2% 미만(또는 40대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의 원동기만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제작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체용 원동기 제작 이력 및 교체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6. 19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8.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9.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 18의2 제1호차목, 같은 별표 제2호타목 및 같은 별표 제3호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나)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다) 단순 오기(誤記)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라)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9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이”를 “기술인력이 30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37조의4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	-------------	-------------	------

나) 제37조의4제5호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	------	--	--

별표 36 제2호다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위반사항란 및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5)나)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44조제7항”을 “법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5)부터 10)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60조제4 항제1호	인증취소		
6)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 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저감효율기준을 유 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0조제4 항제2호	인증취소		
7) 법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 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제4 항제3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인증취소

별표 36 제2호마목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6호의5서식, 별지 제36호의6서식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횡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

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1. 2005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제1종	모든 차종	0g/km	0g/km	0g/km	0g/1주행	0g/테스트	-	-	
제2종	가스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승용3, 화물2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0.4 g/kWh 이하	2.63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	-	-	D-13 모드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승용3, 화물2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제3종	회발유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승용1, 가	1.06 g/km	0.031 g/km	0.025 g/km	0g/1주	1g/테스트	-	

차	승용2, 화물1	나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	ETC 모드
			1.31 g/km	0.044 g/km	0.034 g/km	0g/1주	1g/테스트		
	승용3, 화물2	가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	
			1.06 g/km	0.031 g/km	0.025 g/km	0g/1주	1g/테스트		
		나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	
1.31 g/km			0.044 g/km	0.034 g/km	0g/1주	1g/테스트			
승용4, 화물3		4.0 g/kWh	3.5 g/kWh	0.55 g/kWh	0g/1주	-	-		
경유 자동차	경자동차		0.50 g/km	0.25 g/km	0.30 g/km	-	-	0.025 g/km	ECE-15 및 EUDC 모드
	화물1		이하	이하	이하	-	-	이하	
	승용2	가	0.63 g/km	0.33 g/km	0.39 g/km	-	-	0.04 g/km	
			이하	이하	이하	-	-	이하	
		나	0.95 g/km	0.75 g/km	0.08 g/km	-	-	0.02 g/km	CVS-75 모드
			이하	이하	이하	-	-	이하	
	승용3, 화물2		0.95 g/km	0.78 g/km	0.08 g/km	-	-	0.02 g/km	
승용4, 화물3		2.1 g/kWh	5.0 g/kWh	0.66 g/kWh	-	-	0.02 g/kWh	ND-13 모드	
		이하	이하	이하	-	-	이하		
가스 자동차	승용1	가	2.11 g/km	0.12 g/km	0.047 g/km	0g/1주	1g/테스트	-	CVS-75 모드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나	2.61 g/km	0.19 g/km	0.056 g/km	0g/1주	1g/테스트	-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경자동차, 화물1		2.11 g/km	0.13 g/km	0.078 g/km	0g/1주	1g/테스트	-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승용2	가	2.11 g/km	0.13 g/km	0.078 g/km	0g/1주	1g/테스트	-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나	2.34 g/km	0.19 g/km	0.097 g/km	0g/1주	1g/테스트	-	
			이하	이하	이하	행	이하		

		이하 2.73		이하 0.10				
	승용3, 화물2	g/km	0.22 g/km 이하	g/km 이하	0g/1주 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0.4 g/kWh 이하	3.0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 행	-	-	D-13 모드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제2종 가스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승용1·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각각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라 한다)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120,000km 이내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이하 “결함확인 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12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 휘발유자동차 승용1·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내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라. 경유자동차 승용2의 가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마. 휘발유자동차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바.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비(非)메탄계탄화수소 측정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메탄을 포함하는 총탄화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사.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 이가스	증발가스		
제1종	모든 차종	0g/km	0g/km	0g/km	0g/1주 행	0g/테스트	-	-
제2   가스	경자동차,	0.625	0.0125g/	0.0063	0g/1주	1g/테스트	-	CVS-75모

종	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g/km 이하	km이하	g/km 이하	행	이하		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4 g/kWh 이하	2.0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 행	-	-	ND-13 모드
하 이 브	휘 발 유 · 가 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g/ km이하	0.0063 g/km 이하	0g/1주 행	1g/테스트 이하	-	CVS-75모 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2.0 g/kWh 이하	0.55 g/kWh 이하	0g/1주 행	-	-	ETC 모드
리 드 자 동 차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	-	0.01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1,305 < R W ≤ 1,760kg	0.63 g/km 이하	0.17 g/km 이하	0.23 g/km 이하	-	-	0.01 g/km 이하	
		승용· 화물	RW > 1,760kg	0.74 g/km 이하	0.27 g/km 이하	0.34 g/km 이하	-	-	0.01 g/km 이하	
휘 발 유 자 동 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g/ km 이하	0.0063 g/km 이하	0g/1주 행	1g/테스트 이하	-	CVS-75모 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2.0 g/kWh 이하	0.55 g/kWh 이하	0g/1주 행	-	-	ETC 모드	
제3 종	경 유 자 동 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	-	0.01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1,305 < RW ≤ 1,760kg	0.63 g/km 이하	0.17 g/km 이하	0.23 g/km 이하	-	-	0.01 g/km 이하	
		승용· 화물	RW > 1,760kg	0.74 g/km 이하	0.39 g/km 이하	0.46 g/km 이하	-	-	0.01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3.5 g/kWh 이하	0.46 g/kWh 이하	-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가 스 자 동 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 행	1g/테스트 이하		CVS-75모 드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1.31 g/km 이하	0.033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 행	1g/테스트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4 g/kWh 이하	2.63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 행	-	-	ND-13 모드

##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시험중량은 공차중량에 100킬로그램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자동차는 시험중량(RW) ≤ 1,305킬로그램(kg) 기준에 따른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제3종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차량의 총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 승용·화물과 중형 승용·화물

2) 2006년 9월 30일까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대형 승용·화물과 초대형 승용·화물

마.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제3종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을 제외한 자동차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제3종 가스자동차 중 소형승용자동차

바.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사.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되,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아.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자.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제3종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차.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용도로 등록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 3. 2009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 이 가스	증발가스				
제 1 종	모든 차종	0g/km	0g/km	0g/km	0g/1주 행	0g/테스트	-	-		
제 2 종	휘발유 ·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주 행	2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g/1주 행	-	-	ETC 모드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0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0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 형	RW ≤ 1,305kg	0.50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0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이하
		승용, 중형 화물	1,305 < R W ≤ 1,760kg	0.63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95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이하
	하 이 브리 드	휘발유 · 가스	RW > 1,760kg	0.74 g/km 이하	0.125 g/km 이하	0.215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이 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g/1주 행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4.0 g/kWh 이하	0.4 g/kWh이 하	0.16 g/kWh 이하	0g/1주 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하 이 브리 드	휘발유 ·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주 행	2 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대형	4.0	1.6	0.36	0g/1주	-	-	ETC	

자동차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g/kwh 이하	g/kwh 이하	g/kwh 이하	행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km 이하	0.18g /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ECE-15 및 EUDC 모드	
	경유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18 g/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1,305 < RW ≤ 1,760kg	0.63 g/km 이하	0.235 g/km 이하	0.295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RW > 1,760kg	0.74 g/km 이하	0.28 g/km 이하	0.35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1.2 g/kWh <sup>이</sup> 하	0.3 g/kWh 이하	0g/1주 행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4.0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 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제3종	휘발유·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가 나	1.06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 행	2 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1.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 행	g/테스트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1.6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 행	-	-	ETC 모드	
	경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km 이하	0.18 g/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18 g/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1,305 < RW ≤ 1,760kg	0.63 g/km 이하	0.235 g/km 이하	0.295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sup>이</sup> 하		

	물	RW>1760kg	0.74 g/km 이하	0.28 g/km 이하	0.35 g/km 이하	0g/1주 행	-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 g/kWh 이하	0g/1주 행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4.0 g/kWh이 하	1.2 g/kWh 이하	0.36 g/kWh이하	0g/1주 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시험중량은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경유자동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은 차량을 구동·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1)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가) 경자동차

나) 소형승용(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시험중량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 중형 승용·화물

바.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1)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 승용차

2)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 중형 승용·화물

사. 제2호의 기준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아.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자. 제3종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배기관 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로 측정하되,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차.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카.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타.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의 가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내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파. 경자동차, 소형·중형 승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환산비율에 추가하여 각각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km 이하	140g/km 초과 164g/km 이하
가스 자동차	105g/km 이하	105g/km 초과 124g/km 이하
경유 자동차	161g/km 이하	161g/km 초과 189g/km 이하
환산비율	0.2	0.1

하.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종 휘발유·가스자동차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0.625 g/km 이하	0.0187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거.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서의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5g/km 이하로 한다.

- 1)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 2) 제3종 경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너. 휘발유·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더.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4. 2012년 7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

비고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따른다.

나.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 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	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또는 2g/테스트 이하	0.004 g/km 이하	-	-	CVS-75 모드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	-	-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또는 2g/테스트 이하	0.004 g/km 이하	-	-	CVS-75 모드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1.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2.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는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3.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적용되는 증발가스 기준(1.2g/테스트 이하)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증발가스 기준은 2g/테스트 이하로 한다.
4. 입자상물질 기준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중에서 가솔린 직접분사식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6.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에 해당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및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측정방법
제3종 경자동차, 제3종 소형 승용·화물, 제3종 중형 승용·화물	0.625g/km 이하	0.01875g/km 이하	0.0125g/km 이하	CVS-75 모드

7.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 및 비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다. 경유자동차

저공해자동차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블로바이가스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제2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화물	RW ≤ 1,305kg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1,305 < RW ≤ 1,760kg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9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RW > 1,760kg	0.74 g/km 이하	0.125 g/km 이하	0.21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탄화수소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탄화수소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8.0×10 <sup>11</sup>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 물, 중형승 용·화 물	RW ≤ 1,305kg	0.5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1,305 < RW ≤ 1,760kg	0.63 g/km 이하	0.185 g/km 이하	0.24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RW > 1,760kg	0.74 g/km 이하	0.22 g/km 이하	0.29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0 g/kWh 이하	1.20 g/kWh 이하	탄화수소 0.3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6.0×10 <sup>11</sup> #/km 이하	10 ppm 이하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1.50 g/kWh 이하	1.20 g/kWh 이하	탄화수소 0.30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8.0×10 <sup>11</sup> #/kWh 이하	10 ppm 이하		ESC 모드 또는 WHSC 모드

비고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0.004 g/km 이하	CVS-75 모드

종		중형 승용·화물		이하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이 하	0.10 g/kWh	-	WHTC 모드	
	경유	경자동차, 소형승용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 · 화물	RW ≤ 1,305kg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1,305 < RW ≤ 1,760kg	0.63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9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RW > 1,760kg	0.74 g/km 이하	0.125 g/km 이하	0.2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탄화수소		0.01 g/kWh 이하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4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탄화수소		0.01 g/kWh 이하	ESC 모드 또는 WHSC 모드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비고

1.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및 그 외의 증발가스·입자개수·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가스 사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위 나목의 휘발유·가스 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경유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다목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3.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 및 비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5. 2014년 1월 1일 이후
  -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

비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따른다.

나.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자동차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제2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g/km 이하	0.0125g/km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4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g/kWh 이하	0.23g/kWh 이하	0.05g/kWh 이하	0g/1주행	-	-	10ppm 이하	0.5g/kWh 이하	WHTC 모드
제3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4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g/kWh 이하	0.35g/kWh 이하	0.10g/kWh 이하	0g/1주행	-	-	10ppm 이하	0.5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중에서 가솔린 직접분사식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4.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에 해당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측정방법
0.625g/km 이하	0.01875g/km 이하	0.0125g/km 이하	CVS-75 모드

## 다. 경유자동차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 이가스	입자개수	암모 니아	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중형 승용	0.5 g/km 이하	0.04 g/km 이하	0.08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화물	RW≤1,305kg	0.5 g/km 이하	0.04 g/km 이하	0.08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053 g/km 이하	0.09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RW>1,760kg	0.74 g/km 이하	0.063 g/km 이하	0.10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탄화 수소 0.08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	0.20 g/kWh 이하	탄화 수소 0.065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 행	8.0×10 <sup>11</sup>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중형 승용	0.50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화물	RW≤1,305kg	0.5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079 g/km 이하	0.146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RW>1,760kg	0.74 g/km 이하	0.094 g/km 이하	0.161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4.0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탄화 수소 0.12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 행	6.0×10 <sup>11</sup>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	0.3 g/kWh 이하	탄화 수소 0.097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 행	8.0×10 <sup>11</sup>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	--	---------------------	--------------------	----------------------------------	---------------------	------------	-------------------------------------	-----------------	------------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경자동차, 소형·중형 승용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중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4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중형 화물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4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가 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4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	WHTC 모드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승용· 화물	RW ≤ 1,305kg	0.5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 5g/km 이하	
			1,305 < RW ≤ 1,760kg	0.63 g/km 이하	0.079 g/km 이하	0.14 g/km 이하	0.004 5g/km 이하	
			RW > 1,760kg	0.74 g/km 이하	0.094 g/km 이하	0.161 g/km 이하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g/kWh 이하	0.35 g/kWh	탄화수소 0.12	0.01 g/kWh 이하	WHTC 모드	

			이하	g/kWh		
		1.5 g/kWh 이하	0.3 g/kWh 이하	이하 탄화수소 0.097 g/kWh 이하	0.01 g/kWh 이하	WHS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및 그 외의 증발가스·입자개수·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가스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나목의 휘발유·가스 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경유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다목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6. 2016년 12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나. 휘발유·가스·경유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23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0.35g/테 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이 하	WHTC 모드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합 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경유자동차의 경우 메탄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제5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
  -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화물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나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
  -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하이브리드자동차
7. 2019년 7월 1일 이후
  -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 나.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 소	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가 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	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g/1주행	0.35g/테 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4.0	0.23	0.05	0g/1주행	-	0.01	10	0.5	WHTC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g/kWh 이하	g/kWh 이하	g/kWh 이하			g/kWh	ppm 이하	g/kWh 이하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0.625 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0.35g/테 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및 결합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
  -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	--	------------------------------	--------------------	---------------------	---------------------	---------------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나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하이브리드자동차

8. 2020년 4월 3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무공해)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 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 등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 다.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자동차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제3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함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가스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 [별표 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 비고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배기관에서의 암모니아(NH<sub>3</sub>) 배출허용기준은 10ppm이하로 한다.

## 2.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해당 자동차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면제 [ ] 대상 연료 사용 [ ]**  
**경감 [ ] 시설 최적방지시설 설치 [ ] 명세서**  
**사업장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검사기간 제외)
------	-----	-----	-------------------

제출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종별(업종)

**1. 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명세	대상 시설명				신청 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경감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명세	연료·원료 사용량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산정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배출부과금 (면제 [ ], 경감 [ ]) 대상 (연료 사용 [ ], 최적방지시설 설치 [ ], 사업장 [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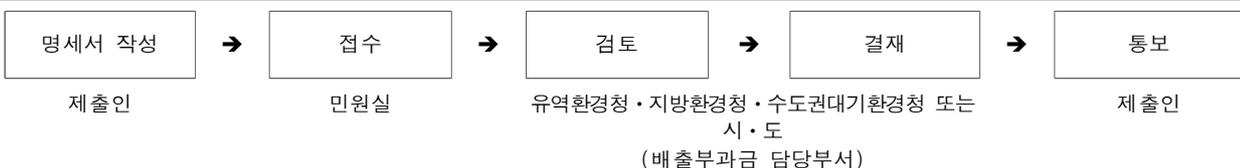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가. 자발적 협약서 사본 1부 나.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제 호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사업장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관리대상물질		

###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뒤쪽)

## &lt;변경사항&gt;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 &lt;처분사항&gt;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 &lt;참고사항&gt;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즉시 처리)
------	-----	--

신고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일(변경일)

변경내용	기존 사항							변경 사항						
비산배출시설 변경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변경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배출가치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배출가치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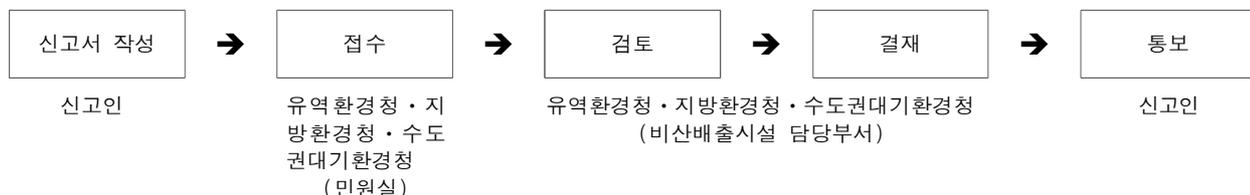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인증번호(Certificate No.) :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신청인	업체명(Company Name)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Name)				
	주소(Address/Head Office)		전화번호(Tel)				
	사업장소재지(Address/Plant)		전화번호(Tel)				
인증항 (Certification Items)	자동차 제원(Vehicle Specifications)						
	자동차 명칭 (형상) (Model Name, Body Type)	자동차 형식 (용도) (Vehicle Type, Use)	엔진 형식 (Engine Type)	차종 (Category)	사용연료 (Fuel Type)	제작사 (Manufacturer)	
	엔진배기량 (Engine Displacement)	최대출력 (Maximum Power)	변속기 (Transmission Type)	차량 총 중량 (Gross Vehicle Weight)	공차중량 (Curb Weight)	선택사양 (Option)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Emission Control Device)			동일 차종(Type of Variant)			
	인증조건(Conditions of Certification)						
	1.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검사 및 결함시정명령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Keep thorough records pertaining to vehicle purchase in preparation for emission test and correction of defects pursuant to Article 50, 51, 52 and 53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2.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Take necessary measures, for example providing maintenance instructions to vehicle owners, to maintain whole functions of emission control devices.)						
	3.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ion can be cancelled in case it correspond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5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4. 배출가스적용기준 및 열화계수(Emission Limits & Deterioration Factor)						
		항목	CO	HC	NOx	PM	Smoke
	배출가스적용기준 (Emission Limits)						
	열화계수(DF)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 1, Article 48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Para. 1, Article 66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Year / Month / Date)							
<b>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b> Minister of Environment,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직인		





(뒤쪽)

변경인증 (Extension of Certification)	- 내용(일자) Content(Date) : -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모델 추가, 변경 등은 제외
패밀리 원동기 형식 (Type of Family Engine)	순번-형식(코드명)-출력

원동기 모델별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형식명 (제작사)	원동기 코드	최대출력 /회전수	배기량 (cc)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수입 사 (대표자 성명)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명칭 (제작사)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형식	비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 결함시정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결함시정계획 내용

① 결함시정대상 차종의 인증번호	⑤ 결함시정 이행 기간
② 결함시정대상 차종	⑥ 결함시정대상 차량 대수
③ 생산(수입)기간	⑦ 결함시정내용 통지 방법
④ 총 판매대수	⑧ 결함시정 비용 천원
⑨ 결함발생원인	
⑩ 시정방안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li> <li>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li> <li>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li> <li>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li> <li>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li> <li>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li> </ol>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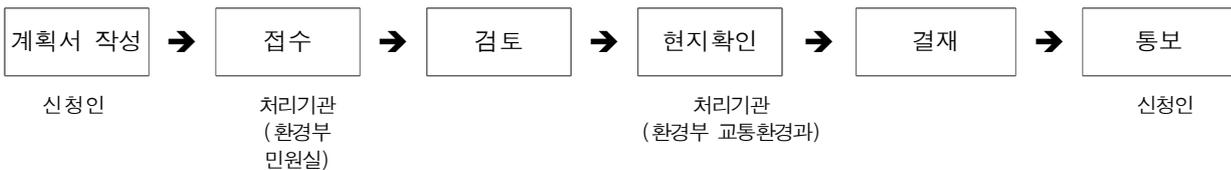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자동차의 명칭 및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③란은 ②란의 자동차를 생산 또는 수입한 기간을 적습니다.
3. ④란은 ②란의 자동차를 판매한 수를 적습니다.
4. ⑤란은 결함시정완료 예정기간을 적습니다.
5. ⑥란은 ②란의 자동차 중에서 실제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수를 적습니다.
6. ⑦란은 ④란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시정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횟수 등을 적습니다.
7. ⑧란은 ⑩란의 시정방안 이행 등에 드는 총 비용을 예상해서 적습니다.
8. ⑨란 및 ⑩란은 결함원인과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 ] 배출가스저감장치 [ ]부착 · [ ]교체      증명서**  
**[ ] 저공해엔진 [ ]개조 · [ ]교체**

자동차 또는	성명	생년월일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명칭	연식

배출가스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기관명	검사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교체 및 저공해엔진 개조 · 교체 실적

부착 · 교체 및 개조 · 교체 일자	금액(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종류
부착 · 교체 및 개조 · 교체 업체명	업체 소재지(전화번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 (서명 또는 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 ] 배출가스저감장치  
[ ] 저공해엔진

##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신청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
	차대번호		장치 부착(개조) 연월일
반납 사유	<input type="checkbox"/> 폐차 또는 폐기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사고·재해·도난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버스 대차 <input type="checkbox"/> 저공해차 대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반납 내용	장치 반납	<input type="checkbox"/> 매연여과장치(DPF, pDPF)	
		<input type="checkbox"/> 산화촉매장치(DOC)	
<input type="checkbox"/> 저공해엔진 촉매			
	<input type="checkbox"/> 현물 반납	<input type="checkbox"/> 금전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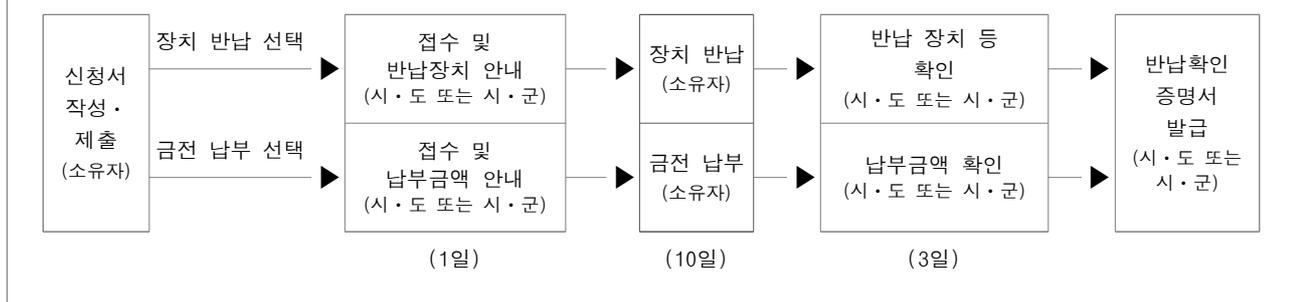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6서식]

##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시험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div>	
	⑥ 사업장 소재지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div>	

전기자동차 제원	⑦ 제작사 (제작연도)	⑧ 자동차 명칭(형상)	⑨ 자동차 형식(용도)	⑩ 차종	⑪ 차대번호	⑫ 회 충전 시 주행거리(주행 모드)	
	⑬ 주 배터리 종류 (제작사)	⑭ 주 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⑮ 탑재 충전기 정격입력전력 (충전용량, kW)	⑯ 구동 모터형식 (최대출력)	⑰ 차량 총 중량	⑱ 공차 중량	
	⑲ 충전구 규격	⑳ 최대속도	㉑ 구동형태	㉒ 내연기관 제원		㉓ 시험에 관한 사항	
				사용연료 : 배기량 : 출력/토크 :		실도로 부하력(hp) : 도로흡수력계수 : 코스트운시간(sec)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사·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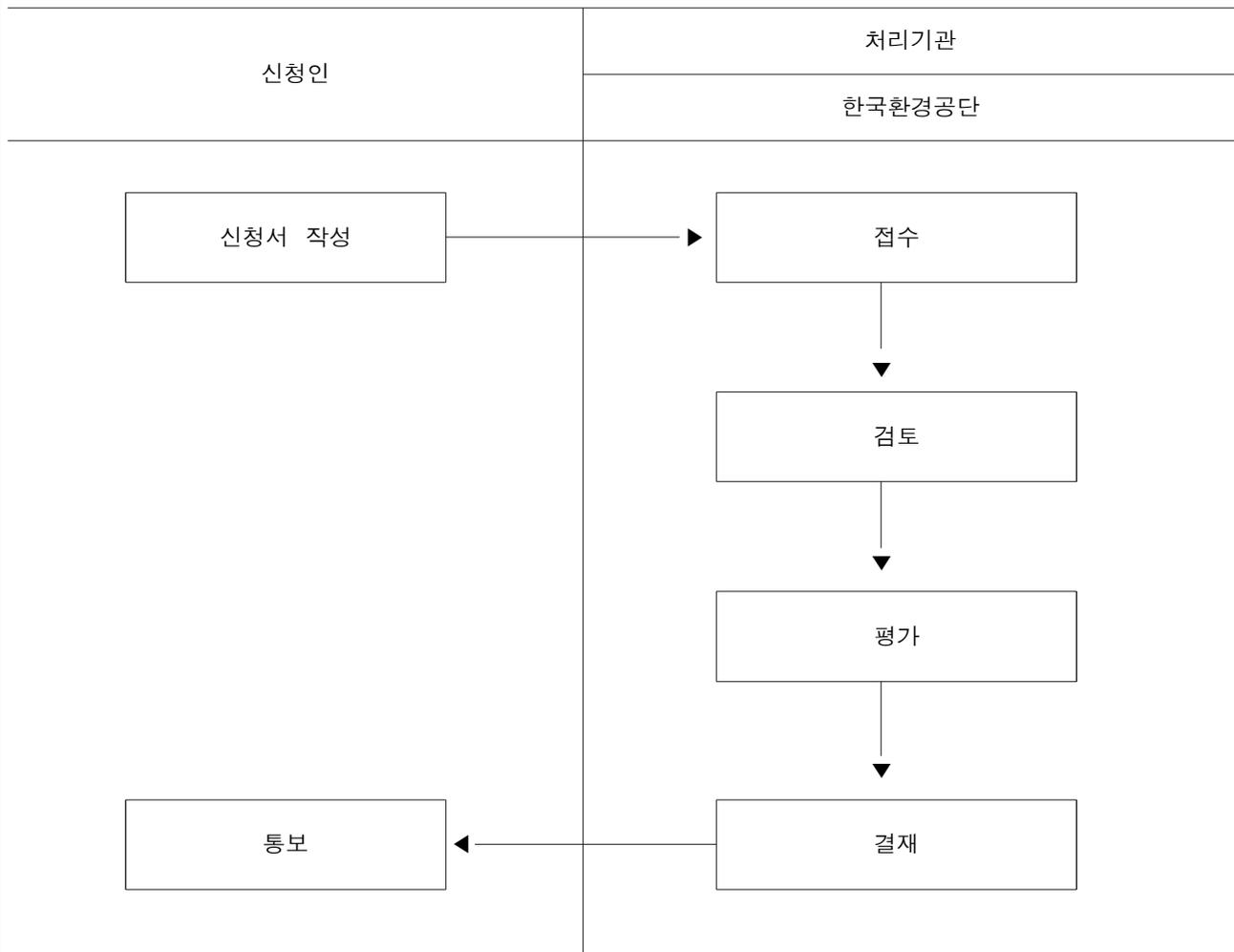
(뒤쪽)

## 작성 방법

1. ㉔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1회 충전거리 시험을 실시한 결과와 적용된 주행시험방법을 적습니다.
2. ㉕란은 차량별 충전 입구(inlet) 규격을 적습니다.
3. ㉖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시험한 최대 속도결과를 적습니다.
4. ㉗란은 2륜, 4륜 구동 해당 여부(2륜의 경우 전·후 여부 포함)를 적습니다.
5. ㉘란은 주행거리확장차량(EREV)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6. ㉙란은 전기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8서식]

인증번호 : 제 호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상 호 (사업장명칭)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장치의 명칭	
장치의 종류	
장치의 형식	
인증 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증 조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 ]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인증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내용	명칭
	종류
	형식

인증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조건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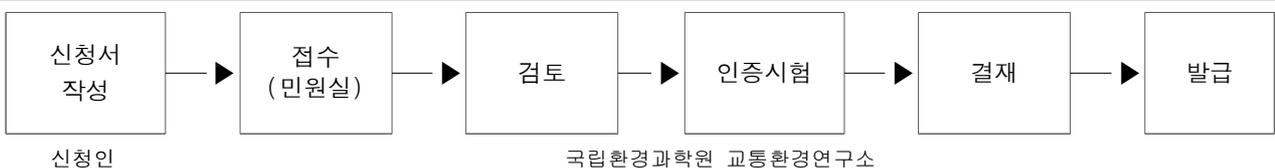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 시험 결과서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 시험 결과서 1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 ]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	------	--------------------------

인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초 인증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인증번호 제 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 ] 저공해엔진 인증서

상 호(사업장 명칭)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		
장치 또는 엔진의 명칭			
장치 또는 엔진의 종류			
장치 또는 엔진의 형식			
인증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증조건		
<p>1. 인증사항에 명시된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제 호

자동차	① 등록번호		② 차대번호		
	③ 최초등록일		④ 연식		
	⑤ 차종(장치인증번호)				
신청인 (자동차 소유자)	⑥ 성명		⑦ 생년월일	⑧ 전화번호	
	⑨ 주소				
확인 사항	⑩ 확인일자(연월일)			⑪ 확인자 성명	
	⑫ 확인결과			⑬ 주행온도 분포 (℃, %)	⑭ 종합판정
	구분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 시	저공해엔진의 구조변경검사 시		
	매연(%)				
	출력/ 회전수 (ps/rpm)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단 이사장  
(성능확인검사기관장)

직인

### 작성요령

- ⑫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 시와 저공해엔진의 구조변경검사 시로 구분하여 측정값을 적습니다.
-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행차 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⑬란은 자기진단장치(OBD)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⑭란은 적합 또한 부적합으로 적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및 수시검사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안 제79조)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로 정함.

##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 신청 등(안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도록 함.

##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안 제82조의4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안 제82조의8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그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구조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8항 및 제9항”으로, “면허의”를 “면허의 양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를 “법 제14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